「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한솔초등학교

Ⅰ 추 진 근 거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Ⅱ 추 진 배 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

Ⅲ 운 영 방 침

❍ 학년(교과)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학교장 결재 후 교육 3주체(교원, 학생, 보호자)에게 공표하고 시행
❍ 교직원 공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지
❍ 본 특례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름

Ⅳ 운 영 기 간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 학칙 개정 전까지
❍ 학칙 개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Ⅴ 세 부 운 영 내 용

한솔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한솔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같은 법 제13조(보호자), 같은 법 제14조(교원),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제3항(교사의 교육권),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같은 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 (학생 인권 보호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성 실현의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제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5조 제④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12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3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월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인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교육적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실과 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지킨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8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 등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학교 밖 출입을 원할 때는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 체육관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20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하여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9. 기타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제21조(용모)

① 용의 복장, 두발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 단,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와 관련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22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켜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제23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4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정규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시간 등)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③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절을 지킨다.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5조(자치활동)

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학생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⑦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른다.

⑧ 학생자치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자치기구에서 한다.

제26조(동아리활동)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필요 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2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교사, 상담교사로 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9조(학교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학교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0조(의결 정족수)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2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3조(주의·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과 학칙에 금지된 행동에 대한 언어적 제지
2.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
3.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 분리 조치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4. **제33조제3항제3호다목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라목에 따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5.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교육활동 방해행위가 지속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 및 가정학습 조치

④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⑤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교육적 조치를 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고 기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제20조에 따라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제35조(소지품 사용 지도)

① 소지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
2. 훈계
3. 훈육
4.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분리

5. 제34조제6항제2호, 제34조제6항제3호, 제34조제7항제4호에 따른 물품 분리

③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지품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6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줌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함
4. 제28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할 수 있다.

1.「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및 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
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및 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

3. 그 밖에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 준용할 수 있는 법령과 지침

제3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위탁기간과 협의를 거쳐 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선도(교육)적 차원의 봉사활동(교내 환경 정화,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전라북도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수업에 출석할 수 없으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자율학습, 가정학습, 위탁교육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0조(심의 확정 및 이의 제기)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하고 징계처분의 이행기간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2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3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한솔초등학교 규정개정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담당교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교원 대표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친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⑧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4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제4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심의 결과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규정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한솔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33조 관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 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34조제7항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일과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일과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제34조제7항제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제34조제7항제3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제34조제7항제4호 제20조에 따라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한솔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35조 관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다목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	가목 또는 나목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분리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이 지정하는 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2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1'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분리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이 지정하는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라목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2	① 다목 '2'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분리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이 지정하는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지각: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 한솔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서식 1]

학생 물품 분리보관 일지

순	일시	장소	학번	성명	분리보관 경위	지도 교사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보호자 알림 일시	반환 여부
1	2023.9.14. (월) 2교시	2-1 교실	10305	○○○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3일) 2023.09.17.(목)	2023.9.14. (월)	2023.9.14. (월)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복도			안전건강위해 물품					
	2023.9.14. (월) 점심시간	운동장			학생구매불가 물품					
					학생소지금지 물품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성]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물품 보관일지는 지도 교사가 작성한다.

■ 한솔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서식 2]

행 동 성 찰 문

20 년 월 일 / 학번 : 학년 반 번 / 성명 :

1. 무슨 일이 있었나요?(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2.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3.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요?

▶ 부족하면 뒷면 이용

보호자	※의견: 성명 : (사인)	담임	담당

[참고] 서식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Ⅵ 기 대 효 과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의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권리 제고 및 책무성 고취를 통한 교육 현장의 안정화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로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학생생활지도 문화 조성